

의안번호	제2618호
의 결	2023. 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허옥희 의원
발의연월일	2023. 5. 10.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허옥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0.

발 의 자 : 허옥희 의원

1. 제안이유

고성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탁기관 선정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“법무사, 행정사”를 추가함.

(안 제9조제4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 호

- 예고기간: 2023. 5. .() ~ 2023. 5. .() [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3호 중 “대학교수”를 “대학교수, 법무사, 행정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<u>대학교수</u>, 공인노무사,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9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대학교수</u>, <u>법무사</u>, <u>행정사</u>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